

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기관 명칭	(법인[], 비법인[])	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대표자 성명						
	기관 소재지	(우편번호:)					
	기관 연락처	전화번호			전자우편주소		
	기관 담당자	성명			연락처		
신청 내용	기관 설립 목적						
	전문인력 인적사항	연번	성명	생년월일	담당 업무	자격증 보유현황	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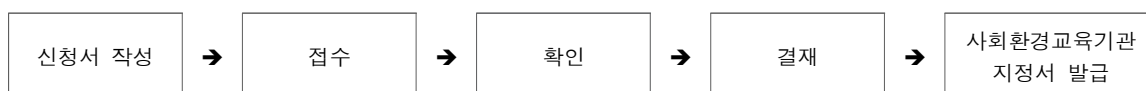
이
한
년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)